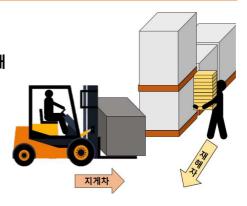


## 피킹작업자와 지게차 부딪힘



## 재해개요

2023. 04. 00.(일) 03:12경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물류센터 피킹장에서 재해자가 지시 박스를 들고 이동하던 중 지게차와 충돌하여 사망함



## 🛂 발생원인

- ▶ 근로자 보행 통로 사용 불가 원인
- (통로 구획 상태 관리 미흡) 보행자 통로 구획 페인트 작업을 한 지 오래되어 보행자 통로를 구분 할수 없는(보행자 통로 미설치) 상태로, 피킹 작업자가 보행자 통로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 방치
- ▶ 시야 미확보 원인
- (수동 대차 미사용) 피킹 작업자는 지시 박스를 수동 대차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들고 이동하여 지게차와 혼재되어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시야가 미확보된 상태로 이동
- ▶ 작업지휘자 미배치
- 피킹장은 지게차와 작업자가 혼재되어 작업하는 장소로, 지게차 충돌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지휘자 미배치

## 🙀 예방대책

- 1 보행자 통로 구획 페인트 작업 실시 및 관리
  - 사업장 내 작업자가 보행 통로를 항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로 구획 페인트 작업을 실시하고, 작업 주기 등을 정하여 그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실시
- 보행 작업자 시야 확보에 대한 관리 감독
  - 피킹 작업자가 지시 박스를 지정 장소로 운반할 경우 수동 대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작업자의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관리 감독
- ③ 작업지휘자 배치
  - 사업장 내 보행자 통로와 지게차 경로가 교차되는 장소 등 지게차 충돌 위험이 높은 장소에는 작업 지휘자 등을 배치